

의안번호	제145호
의결연월일	2018. 12. 20.

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12월 05일 논산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18년 12월 05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18년 12월 20일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)

1)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원을 함으로써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게 하고자 함.

2). 주요내용

-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(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)
: 전몰군경유족⇒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수행자
-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결정(안 제3조제2항)
: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5만원⇒10만원
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수행자 월 5만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